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October 26,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영국, 그룹 내부 거래의 '상업성'에 대한 입증 필요성

영국에서 '상업적 기반(on a commercial basis)'으로 수행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본질적으로 비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의 상업성이 명백해 보이는 일반적인 기업 그룹에서는 동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조세심판원(First-tier Tribunal, 이하 "FTT")의 *Scheckter v HMRC [2026] UKFTT 1280 (TC)* 결정은 그룹 내부 거래의 '상업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의 활동을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습니다. 두 법인 모두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FTT 는 그룹 전체 사업의 상업성 및 개별 법인이 실제로 각각의 이익 창출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내 개별 법인 간에 수행된 거래에 관하여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의 '상업적 기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FTT 는 개별 법인의 사업이 '상업적 기반'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룹 내 다른 법인이 소유한 가치 있는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적절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거래의 '상업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룹 내부 거래에서 '상업성'이 훼손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상업적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결손금 사용 등에 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사점

영국 FTT의 Scheckter v HMRC 결정은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그룹 내 개별 법인 간에 수행된 거래는 비상업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룹 내부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비상업적으로 보이는 납세자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상업적인 고려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개별 법인의 관점(그룹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개별 법인의 관점에서 그룹 내부 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U, 조세 목적상 비협조적 관할지역 목록 개정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026년 10월 9일 조세 목적상 비협조적 관할지역에 대한 EU 목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파나마와 베트남은 블랙리스트(Annex I)에서 그레이 리스트(Annex II)로 이동하였으며, 벨리즈는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파나마

파나마는 국외원천소득 면제제도를 EU 행동규범그룹(Code of Conduct Group)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유해한 조세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해소되어 Annex I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심층 검토를 받기로 약속함에 따라 Annex II에 포함되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2025년 EOIR 동료평가에서 "비준수(non-compliant)"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글로벌 포럼의 EOIR 심층 검토를 받기로 함에 따라 Annex I에서 Annex II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동료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약속도 Annex II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파나마와 베트남은 EU의 조세 목적상 비협조적 관할지역인 블랙리스트(Annex I)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세 투명성 및 국제조세 기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이행을 전제로 그레이 리스트(Annex II)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지위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관련 국제조세 기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EOIR 심층 검토와 함께 CbCR 체계에 대한 동료평가 권고사항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 현지법인 또는 관계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정보교환 및 CbCR 관련 제도 개선과 후속 평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U 비협조적 관할지역 목록의 변경은 해당 관할지역과 관련된 거래 및 투자구조에 대한 세무상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각 관할지역의 목록상 지위뿐만 아니라 이에 연계된 EU 회원국별 조세상 또는 행정상 조치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심판례: 대법원 2026 두 30813 (2026.09.03) [국승]

제목: 정상가격범위에 따른 정산금이 상표 사용 등의 대가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개요

- 원고는 ○○○ 그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소매업을 영위하며, 이탈리아 법인이 생산한 상품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과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 및 품질기준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Sublicense Agreement를 체결함. 동 계약은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제3자 소매유통업자의 정상가격범위와 비교하여,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양 당사자 간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동 계약에 따라 이탈리아 법인에 약 33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지급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함.

2. 청구법인 주장

- 이 사건 지급금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상표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또한 지급금액을 노하우 등의 사용 대가로 본 것은 조세조약상 노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해당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3. 처분청 의견

-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탈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입장임.

4. 쟁점

- 영업이익률을 정상가격범위와 비교하여 정산한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 및 품질기준 등 정보·노하우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 한·이 조세조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국내법인 구 상표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한 행위는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급금액은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표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특히 일정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양방향 정산방식은 품질기준 준수 및 브랜드 명성 유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상가격에 따른 양방향 조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금액의 사용료소득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의 대가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제공한 품질기준 등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조법상 보상조정 및 조세조약상 사용료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국승)

03 관세

관세청 자율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내용

관세청은 2026년 10월 16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일정 수입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 대신 자율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2년 단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8개 분야를 자체 점검하고, 독립성을 갖춘 확인관세사 2인 이상의 검증을 거쳐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 조치가 완료된 자율심사 사항은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고처분 금액의 15%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거 규정: 관세법 제 38 조 제 4 항, 관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 4 장의 2(자율심사), 제 60 조의 2 부터 제 60 조의 8

2. 제도의 배경

(1) 관세조사 대상업체 확대

관세청의 심사정책은 제한된 조사인력으로 모든 수출입기업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에서,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리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스스로 점검·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심사와 AEO 종합심사만으로는 다양한 규모의 수입기업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문제의식 아래, 자율심사와 성실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점검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과거 AEO 업체 중심으로 운용되었던 자가점검 방식의 범위를 非 AEO 기업까지 넓히고, 관세조사의 방식이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서면 및 비대면 방식까지 포괄하는 가운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하여 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조사·수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율관리 유도”

검찰 조직 개편 논의와 특별사법경찰기관의 책임수사 강화 등 집행환경의 변화는 관세청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 혐의나 고위험 사안에는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통관 적법성 분야의 신고 정확성 점검은 기업의 자율점검을 활용하는 이원화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율심사는 기업의 자율시정을 촉진하고 세관의 인력은 고위험·불성실 영역에 집중시키는 위험기반 심사체계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자율심사 제도의 상세

(1) 절차

1. 신청	자율심사업체 신청서 및 확인관세사 선임 관련 서류 제출
2. 관할세관 보고	세관장이 접수일부터 7 일 이내 관세청장에게 보고
3. 관세청 검토·심의	접수 마감일부터 30 일 이내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4. 승인	관할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 승인서 발급
5. 자체점검	2 년 단위로 8 개 분야와 제공된 위험정보 점검
6. 세액 정리	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 등 과부족 세액 정리

7. 외부 검증	독립성을 갖춘 확인관세사 2 인 이상이 결과 검증·확인
8. 결과보고	대상기간 종료일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1 개월 연장 가능
9. 세관 심사	세관 검토 및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상정
10. 결과 확정	제출일부터 6 개월 이내 결과 통보 후 조치 완료 건 조사 면제

(2) 신청 대상 및 요건

- 최근 2 년 연평균 수입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3 천만불 이상으로 예상됨
-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관세사 2 인 이상 선임
*해당 기업의 수출입신고 또는 환급신청 업무를 수행한 관세사 등은 확인관세사에서 제외

(3) 자율심사 주기 및 범위

승인기업은 원칙적으로 2 년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범위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내국세, 외환거래, 수출입 요건 등 총 8 개 분야와 세관이 제공하는 위험정보를 포함합니다. 최초 승인연도에는 직전 관세조사 대상기간 이후부터 관세부와 제척기간 범위가 고려됩니다.

(4) 결과제출 및 확정

회사는 보고서 제출 전 과부족 세액을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리하고, 확인관세사의 검증·확인을 거친 결과보고서를 대상기간 종료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1 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관은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6 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자율심사 혜택

- 조치가 완료된 자율심사 사항에 대한 법인심사 면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통고처분 대상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 금액의 15% 감경

다만, 부정합 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또는 세관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사항은 결과 확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자율제도의 비교

관세청은 기업의 자율적인 신고오류 점검과 법규준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제도, 자율심사제도 및 AEO 자율점검제도를 현재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제도는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용

대상과 점검주기, 관세조사 면제 등 구체적인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혜택을 비교하여 자사에 적합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명	성실신고제도	자율심사제도	AEO 자율점검제도
대상업체	연간 수입액 미화 3,000 만달러 미만 비 AEO 업체 중심	2년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3천만불 이상 예상)	수출입안전관리공인기업 (“AEO 업체”)
근거 규정	관세법 제 115 조의 2	·관세법 제 38 조 ·관세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개정 추진 중
시행주기	매년	2년	
혜택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경감규정 유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조치 완료 사항 법인심사 면제, · ·통고처분 금액 감경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경감규정 유지	· 개정 추진 중 (자율심사제도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혜택 예상)

*상세 기준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의견취합 및 개정 작업 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관세청의 정책방향은 기업이 스스로 신고 정확성과 통관 적법성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하게 자율관리한 기업에는 조사부담 완화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조사를 피하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기업의 관세 행정을 정기적·예측 가능한
통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자율심사의 혜택은 신청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은 자율심사 대상요건의 충족 여부와 자체적인 점검·개선 역량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환급 및 수출입요건 등 주요 통관 분야의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발견된 오류를 적시에 정정할 수 있는 내부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별력 있는 확인 관세사의 선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율심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신청 가능성, 관세 리스크 수준 및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 참여 이후에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자율심사 결과를 기업의 상시적인
관세 관리절차에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세청의 자율심사제도는 수입자가 신고 정확성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위험을 스스로 점검·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미국 CBP의 Reasonable Care 원칙과 정책적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적인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주요 검토사항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며, 발견된 오류를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KPMG 관세법인은 기업이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되고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검토부터 관세 리스크 진단, 내부통제 개선, 자율심사 수행 및 세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심사제도 및 자율점검제도 등은 현재 의견 취합 또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KPMG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분석 및 그 시사점을 적기에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